

## 의안처리상황표

의안번호	581
건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6년 3월 23일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결과	2026년 4월 28일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6년 4월 30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출장 여비 부정 수령이 발생할 경우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비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1
----------	-----

발의연월일 : 2026년 3월 23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임현주, 정윤주,  
진선아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출장 여비 부정 수령이 발생할 경우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비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함.

## 2. 주요내용

가. 조문 내 별표 표기 및 문장부호 등 법령 정비(안 제3조제8호)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금액 및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금 부과 규정 수정(안 제4조)

다. 미납 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강제이행 절차 규정 마련(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6. 3. 27.~ 2026. 4. 2.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용함에 있어서”를 “준용할 때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관한 규정”을 “관한 규정”으로 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 ②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의 보전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u>준용함에 있어</u> <u>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u></p> <p>1. ~ 4. (생략)</p> <p>5. 영 제24조제5항 중 “<u>「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u>”은 “<u>「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u>”으로 <u>분다.</u></p> <p>6. 영 제27조의 규정은 <u>준용하지 아니한다.</u></p> <p>7. (생략)</p> <p>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u>관한 규정</u>”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p>	<p>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p> <p>-----</p> <p>-----</p> <p>----- <u>준용할 때에</u>-----</p> <p>----- <u>따른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영 제24조제5항 중 “<u>「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u>”은 “<u>「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u>”으로 <u>분다.</u></p> <p>6. 영 제27조는 <u>준용하지 아니한다.</u></p> <p>7. (현행과 같음)</p> <p>8. -- <u>별표 1</u> -----</p> <p>-----</p> <p>----- <u>관한 규정</u>-----</p> <p>-----</p> <p>-----</p> <p>-----</p> <p>-----</p> <p>-----</p> <p>-----</p> <p>-----</p>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  
-----.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

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의 보전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